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494310	
등록번호	110111-4943109	
상 호	주식회사 아이마케팅코리아	. . .
	주식회사 옐로모바일 (Yellomobile Inc)	2013.10.22 변경 2013.10.23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 503호(잠원동, 태승빌딩)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 601호(잠원동, 태승빌딩)	2013.03.02 변경 2013.03.26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 에이동(신사동, 제이타워)	2014.07.21 변경 2014.07.24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3층 비동(신사동, 제이타워)	2018.11.05 변경 2018.11.19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374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2020.02.03 변경 2020.02.12 등기
광고방법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 .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mktkorea.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12.10.19 변경 2012.10.25 등기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llomobil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3.12.20 변경 2013.12.24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금 500 원	2016.05.03 변경 2016.06.08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 주	. . .
	5,000,000 주	2012.09.25 변경 2012.09.25 등기
	100,000,000 주	2015.07.09 변경 2015.07.2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보통주식	10,000 주	금 5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 주		2012.08.28 변경
보통주식	20,000 주	금 100,000,000 원	2012.08.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7,150 주		2012.08.29 변경
보통주식	27,150 주	금 135,750,000 원	2012.08.3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7,150 주		2012.09.19 변경
보통주식	37,150 주	금 185,750,000 원	2012.09.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6,350 주		2012.09.25 변경
보통주식	46,350 주	금 231,750,000 원	2012.09.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9,560 주		2012.10.20 변경
보통주식	49,560 주	금 247,800,000 원	2012.10.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7,560 주		2012.11.24 변경
보통주식	67,560 주	금 337,800,000 원	2012.11.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9,435 주		2013.01.24 변경
보통주식	69,435 주	금 347,175,000 원	2013.01.2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1,304 주		2013.03.21 변경
보통주식	69,435 주		2013.03.21 등기
종류주식	1,869 주	금 356,52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70,304 주		2013.04.29 변경
보통주식	68,435 주		2013.05.06 등기
종류주식	1,869 주	금 351,52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71,991 주		2013.07.05 변경
보통주식	70,122 주		2013.07.05 등기
종류주식	1,869 주	금 359,95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73,116 주		2013.07.17 변경
보통주식	71,247 주		2013.07.18 등기
종류주식	1,869 주	금 365,58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74,016 주		2013.07.23 변경
보통주식	72,147 주		2013.07.24 등기
종류주식	1,869 주	금 370,08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44,233 주		2013.08.08 변경
보통주식	238,066 주		2013.08.09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221,16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45,883 주		2013.08.17 변경
보통주식	239,716 주		2013.08.19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229,41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49,582 주		2013.08.22 변경
보통주식	243,415 주		2013.08.26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 2/47 -

등기번호	49431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종류주식	6,167 주	금 1,247,9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53,281 주		2013.08.23 변경
보통주식	247,114 주		2013.08.26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266,40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56,861 주		2013.08.24 변경
보통주식	250,694 주		2013.08.26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284,30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63,493 주		2013.09.06 변경
보통주식	257,326 주		2013.09.10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317,46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69,369 주		2013.09.07 변경
보통주식	263,202 주		2013.09.10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346,84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74,318 주		2013.09.10 변경
보통주식	268,151 주		2013.09.10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금 1,371,59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296,921 주		2013.09.26 변경
보통주식	268,151 주		2013.09.26 등기
종류주식	28,770 주	금 1,484,60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19,524 주		2013.10.01 변경
보통주식	268,151 주		2013.10.01 등기
종류주식	51,373 주	금 1,597,62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0,825 주		2013.10.09 변경
보통주식	268,151 주		2013.10.10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654,1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6,340 주		2014.01.16 변경
보통주식	273,666 주		2014.01.16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681,7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41,855 주		2014.01.17 변경
보통주식	279,181 주		2014.01.21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709,27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47,366 주		2014.01.18 변경
보통주식	284,692 주		2014.01.21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736,83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49,102 주		2014.03.07 변경
보통주식	286,428 주		2014.03.10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745,5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56,846 주		2014.03.11 변경
보통주식	294,172 주		2014.03.1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종류주식	62,674 주	금 1,784,23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58,652 주		2014.03.12 변경
보통주식	295,978 주		2014.03.18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793,26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59,217 주		2014.03.15 변경
보통주식	296,543 주		2014.03.18 등기
종류주식	62,674 주	금 1,796,08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62,170 주		2014.04.11 변경
보통주식	296,543 주		2014.04.15 등기
종류주식	65,627 주	금 1,810,85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69,552 주		2014.04.19 변경
보통주식	296,543 주		2014.04.22 등기
종류주식	73,009 주	금 1,847,76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85,792 주		2014.04.30 변경
보통주식	296,543 주		2014.05.02 등기
종류주식	89,249 주	금 1,928,96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88,606 주		2014.05.08 변경
보통주식	296,543 주		2014.05.12 등기
종류주식	92,063 주	금 1,943,03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4,802 주		2014.05.16 변경
보통주식	296,543 주		2014.05.19 등기
종류주식	98,259 주	금 1,974,0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6,581 주		2014.06.24 변경
보통주식	298,322 주		2014.06.30 등기
종류주식	98,259 주	금 1,982,90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7,076 주		2014.06.26 변경
보통주식	298,817 주		2014.06.30 등기
종류주식	98,259 주	금 1,985,38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7,785 주		2014.07.11 변경
보통주식	299,526 주		2014.07.14 등기
종류주식	98,259 주	금 1,988,9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97,785 주		2014.07.14 변경
보통주식	303,066 주		2014.07.15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1,988,9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2,942 주		2014.07.24 변경
보통주식	308,223 주		2014.07.3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014,7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5,725 주		2014.07.25 변경
보통주식	311,006 주		2014.07.30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종류주식	94,719 주	금 2,028,6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7,855 주		2014.07.26 변경
보통주식	313,136 주		2014.07.3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039,27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08,919 주		2014.07.29 변경
보통주식	314,200 주		2014.07.3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044,59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10,693 주		2014.08.08 변경
보통주식	315,974 주		2014.08.11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053,46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16,418 주		2014.09.30 변경
보통주식	321,699 주		2014.10.06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082,09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22,250 주		2014.09.30 변경
보통주식	327,531 주		2014.10.06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11,25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24,606 주		2014.09.30 변경
보통주식	329,887 주		2014.10.06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23,03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27,445 주		2014.09.30 변경
보통주식	332,726 주		2014.10.06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37,2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27,868 주		2014.10.08 변경
보통주식	333,149 주		2014.10.13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39,34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29,395 주		2014.10.08 변경
보통주식	334,676 주		2014.10.13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46,97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1,112 주		2014.10.11 변경
보통주식	336,393 주		2014.10.2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55,56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2,829 주		2014.10.14 변경
보통주식	338,110 주		2014.10.2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64,14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4,055 주		2014.10.15 변경
보통주식	339,336 주		2014.10.2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70,27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5,281 주		2014.10.16 변경
보통주식	340,562 주		2014.10.20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76,40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6,507 주		2014.10.17 변경
보통주식	341,788 주		2014.10.20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82,53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38,960 주		2014.10.21 변경
보통주식	344,241 주		2014.10.23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194,8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40,329 주		2014.10.22 변경
보통주식	345,610 주		2014.10.23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201,64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41,434 주		2014.10.23 변경
보통주식	346,715 주		2014.10.23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금 2,207,17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78,505 주		2014.12.09 변경
보통주식	346,715 주		2014.12.23 등기
종류주식	94,719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금 2,392,5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78,505 주		2014.12.10 변경
보통주식	422,490 주		2015.01.06 등기
종류주식	18,944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금 2,392,52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80,633 주		2014.12.10 변경
보통주식	424,618 주		2015.01.06 등기
종류주식	18,944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금 2,403,16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80,633 주		2014.12.10 변경
보통주식	437,395 주		2015.03.17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금 2,403,16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83,223 주		2015.05.08 변경
보통주식	439,985 주		2015.05.13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금 2,416,11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84,642 주		2015.05.21 변경
보통주식	441,404 주		2015.06.24 등기
종류주식	6,167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금 2,423,21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86,061 주		2015.07.13 변경
보통주식	442,823 주		2015.07.14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 6/47 -

등기번호	49431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종류주식	6,167 주	금 2,430,305,000 원	2015.07.01 변경 2015.10.06 등기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발행주식의 총수	486,061 주	금 2,430,305,000 원	2015.12.30 변경 2015.12.31 등기
보통주식	448,990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발행주식의 총수	491,739 주	금 2,458,695,000 원	2015.12.30 변경 2016.01.11 등기
보통주식	454,668 주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발행주식의 총수	494,578 주		
보통주식	457,507 주	금 2,472,890,000 원	2016.05.03 변경 2016.06.08 등기
전환우선주식	37,071 주		
발행주식의 총수	4,945,780 주		
보통주식	4,575,070 주	금 2,472,890,000 원	2016.06.21 변경 2016.06.22 등기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발행주식의 총수	4,956,780 주		
보통주식	4,586,070 주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금 2,478,390,000 원	2016.11.11 변경 2016.11.1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985,176 주		
보통주식	4,614,466 주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금 2,492,588,000 원	2016.12.02 변경 2016.12.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999,374 주		
보통주식	4,628,664 주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1,624 주	금 2,499,687,000 원	2017.01.04 변경 2017.01.16 등기
보통주식	4,630,914 주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9,174 주	금 2,500,812,000 원	2017.07.11 변경 2017.07.12 등기
보통주식	4,638,464 주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9,174 주		
보통주식	4,638,464 주	금 2,504,587,000 원	2018.01.11 변경 2018.01.16 등기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10,824 주		
보통주식	4,640,114 주	금 2,505,412,000 원	2018.04.10 변경 2018.04.13 등기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11,124 주		
보통주식	4,640,414 주		
전환우선주식	370,710 주	금 2,505,562,000 원	

목	적
1. 광고 대행 서비스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광고전략 컨설팅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제작 공급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1. 배너 광고, 인쇄물 광고, 쿠폰 광고물 등 제작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광고 인력 및 용역 제공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마케팅 기획 및 마케팅 컨설팅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광고 이벤트 대행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광고 애니메이션 제작 및 공급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바이얼 마케팅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3.10.01	삭제	2013.10.02	등기>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프랜차이즈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프랜차이즈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시스템통합 구축 서비스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시스템통합 구축 서비스의 개발, 제작 및 판매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인터넷 정보 검색업,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인터넷 정보 검색업,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쇼핑 도매업, 소매업 및 관련 유통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쇼핑 도매업, 소매업 및 관련 유통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국내외 여행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국내외 여행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웹디자인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웹디자인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펜션업, 모텔업, 호텔업 및 숙박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펜션업, 모텔업, 호텔업 및 숙박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예약관리 프로그램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예약관리 프로그램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위 각호외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5.03.12	삭제	2015.03.19	등기>
1. 위 각호외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3.10.01	추가	2013.10.02	등기>
1.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2015.03.12	추가	2015.03.19	등기>
1.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2015.03.12	추가	2015.03.19	등기>
1.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	--------

1.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015.03.12	추가	2015.03.19	등기>
1.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2015.03.12	추가	2015.03.19	등기>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5.03.12	추가	2015.03.19	등기>
	<2017.01.16	삭제	2017.01.16	등기>
1. 온라인 쇼핑 중개업 및 정보 서비스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온라인, 모바일 광고대행서비스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웹, 모바일 마케팅 대행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인터넷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공급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광고 기획, 광고매체운영, 광고판매, 광고대행, 광고서비스대행 등 광고 사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통신판매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인터넷 정보 검색업,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2018.04.02	삭제	2018.04.27	등기>
1.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7.01.16	추가	2017.01.16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최태영 7409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93번길 35, 106동 1903호(죽전동, 성현마을반도유보리아파트)	2012년 10월 19일 말소	2012년 10월 25일 등기
사내이사 최태영 740913-*****		
사내이사 최태영 7409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93번길 35, 106동 1903호(죽전동, 성현마을반도유보리아파트)	2012년 10월 19일 주소기입	2012년 10월 25일 등기
	2013년 01월 22일 사임	2013년 01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혁 710607-*****	2012년 10월 19일 사임	2012년 10월 25일 등기
감사 전용진 840123-*****	2013년 01월 22일 사임	2013년 01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혁 71060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41, 326동 813호(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2013년 01월 22일 취임	2013년 01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혁 710607-*****	2013년 03월 07일 주소삭제	2013년 03월 07일 등기
	2016년 03월 30일 중입	2016년 04월 12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등기번호	494310	
2019년 03월 30일 중입	2019년 04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최태영 740913-*****		
2013년 03월 07일 취임	2013년 03월 07일 등기	
2014년 12월 09일 사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유재왕 740311-*****		
2013년 03월 07일 취임	2013년 03월 07일 등기	
2014년 12월 09일 사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사외이사 박영훈 680517-*****		
2013년 03월 07일 취임	2013년 03월 07일 등기	
2014년 12월 09일 사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대표이사 이상혁 71060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41, 326동 813호(잠원동, 신반포12차아파트)		
2013년 03월 07일 취임	2013년 03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이상혁 71060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32동 506호(한남동)		
2014년 03월 11일 주소변경	2014년 04월 15일 등기	
대표이사 이상혁 71060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32동 506호(한남동, 한남더힐)		
2016년 03월 30일 중입	2016년 04월 12일 등기	
2019년 03월 30일 중입	2019년 04월 11일 등기	
대표이사 이상혁 71060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0길 25, 103동 1103호(옥수동, 현대아파트)		
2019년 06월 03일 주소변경	2019년 07월 16일 등기	
감사 전용진 840123-*****		
2013년 07월 31일 취임	2013년 07월 31일 등기	
2013년 12월 20일 사임	2013년 12월 24일 등기	
사외이사 하태훈 720116-*****		
2013년 12월 20일 취임	2013년 12월 24일 등기	
2016년 12월 20일 퇴임	2017년 01월 16일 등기	
사외이사 박재현 720718-*****		
2013년 12월 20일 취임	2013년 12월 24일 등기	
2014년 12월 09일 사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영 690527-*****		
2013년 12월 20일 취임	2013년 12월 24일 등기	
2014년 03월 28일 사임	2014년 04월 02일 등기	
감사 이상훈 740804-*****		
2013년 12월 20일 취임	2013년 12월 24일 등기	
2014년 03월 28일 사임	2014년 04월 02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영 690527-*****		
2014년 03월 28일 취임	2014년 04월 02일 등기	
2017년 03월 31일 퇴임	2017년 04월 14일 등기	
감사 전해청 740311-*****		
2014년 03월 28일 취임	2014년 04월 02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6월04일 12시05분57초

- 10/47 -

등기번호	494310					
2017년 03월 31일 중임	2017년 04월 14일 등기	2018년 06월 15일 사임	2019년 02월 12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훈 740804-*****		2014년 12월 09일 취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2017년 03월 31일 사임	2017년 04월 14일 등기	
사내이사 임진석 830207-*****		2014년 12월 09일 취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2017년 12월 09일 중임	2018년 01월 05일 등기	
		2018년 11월 26일 사임	2018년 12월 03일 등기			
사외이사 구분용 791211-*****		2014년 12월 09일 취임	2015년 01월 29일 등기	2017년 12월 09일 중임	2018년 01월 05일 등기	
		2020년 03월 16일 사임	2020년 04월 06일 등기			
사외이사 미합중국인 유기돈 1971년 05월 14일생		2015년 02월 27일 취임	2015년 03월 10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퇴임	2018년 04월 17일 등기	
사내이사 임승원 600601-*****		2017년 03월 31일 취임	2017년 04월 14일 등기	2017년 07월 13일 사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석 780220-*****		2017년 07월 13일 취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2019년 03월 29일 사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최태영 740913-*****		2017년 07월 13일 취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감사 김진후 651116-*****		2019년 01월 21일 취임	2019년 02월 12일 등기			
사내이사 이기욱 860106-*****		2019년 03월 29일 취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2019년 12월 02일 사임	2019년 12월 0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신중희 681218-*****		2019년 03월 29일 취임	2019년 04월 11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식

- ① 배당에서의 우선적 지위
기명식전환우선주식(이하 “본 주식”)은 참가적 우선주로서,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배당기준일에 관하여는 본 주식이 발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초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가) 보통주 또는 본 주식 외 다른 전환우선주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본 주식이 보통주로 모두 전환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보통주식 수에, 배당대상 보통주 또는 본 주식 외 다른 우선주에게 배당할 주당 배당액을 곱한 금액에 관하여 본 주식에 우선 배당한다.
- (나)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는 우선주에 배당할 경우: 전환권 없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을 동

등기번호

494310

우선주의 발행가액으로 나눈 후, 이에 본 주식에 대한 발행가격(이하 “본 주식 발행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본 주식에 우선 배당한다.

(다) 단, 1종 또는 여러 종의 주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위 두 가지 방법 중 본 주식에 대한 배당액이 극대화되는 방안에 따라 우선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본 제1항에 따른 우선배당은 현물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각 종류 주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회식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잔여재산분배에서의 우선적 지위

1.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의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본 주식 발행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 주식에 대한 배당결정 후 미지급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만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 또는 여타 우선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한다(현물에 의한 잔여재산분배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현물의 경우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함).

2. 위 1호에 따라 본 주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상 우선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 또는 여타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각 주주가 분배받을 금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분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주식 등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종류주식은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보통주 수의 비율에 따라 보통주와 함께 동순위로 잔존 잔여재산을 안분하여 배분받는다.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③ 의결권

본 주식은 의결권을 가진다. 법령과 정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식을 포함한 우선주는 보통주 주주와 함께 결의에 참여한다. 또한, 정관 변경이나 신주발행, 합병 등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안건(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관하여 본 주식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성

본 주식은 양도가능하다.

⑤ 전환

1. 전환권

본 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 주식에 관하여 회사의 보통주로의 전환 청구 가능하다.

단, 전환 시 보통주의 단주는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다.

2. 전환권자

본 주식에 관하여 보통주로의 전환청구권은 본 주식의 주주에게 있다.

3.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위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주식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단, 위 존속기간 전에 기업공개(단, 주당 최소 US\$3,884.40 또는 관련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해당 금액으로 기업공개되어 동 기업공개로 회사에 유입되는 금액이 US\$100,000,000 또는 관련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해당 금액인 경우에 한하며, 보통주와 관련된 주식배당, 분할, 병합 또는 그와 유사한 각 자본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정이 전제됨)되는 경우 또는 본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등기번호	494310
------	--------

4. 전환가격

본 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된다.

5. 전환의 효력발생일

본 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날이 된다.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6. 전환가격의 조정

(i) 우선주에 관한 배당이나 분배로 이루어지는 보통주(보통주로 전환.교환가능한 증권, 또는 보통주나 위와 같이 전환.교환가능증권에 관한 인수권 포함), (ii) 배당 또는 주식분할에 의하거나, 기타 아래 (가) 내지 (라)항의 적용을 받는 보통주, 이에 관한 인수권 또는 전환.교환가능증권, (iii) 회사나 그 자회사의 임직원등에게 지급되는 보통주나 이에 관한 인수권, (iv) 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나 전환.교환가능증권, 전환.교환가능증권에 따라 전환 또는 교환된 보통주, (v) 회사의 차입,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발행한 보통주, 전환.교환가능증권, 이에 관한 인수권의 경우를 각 제외하고(이들의 경우는 아래 별도호에서 규정함), 본 주식 발행 후 무상 또는 당시 적용되는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통주(이하 “대상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CP2 = CP1 * (A + B) \div (A + C)$$

CP2 : 조정 후 전환가격

CP1 : 조정 전 전환가격

A : 조정 전 시점에 기발행 된 보통주의 수(전환 가능한 증권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될 것을 가정함)

B : 조정 전 전환가격으로 대상보통주를 발행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산출되는 보통주의 수(대상보통주 발행으로 회사가 받은 대가를 조정 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

C : 대상보통주의 수

본 주식 발행일 이후 인수권이나 전환.교환가능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 인수권이나 전환.교환가능증권의 조건에 따라 인수 가능한 최대한도의 보통주의 수를 위 대상보통주의 수에 포함한다.

(가) 주식분할 또는 병합에 따른 조정

주식분할 또는 병합에 따른 지분을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주식분할의 경우 전환가격을 감액하여 전환으로 발행할 보통주의 수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키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격을 증액하여 전환으로 발행할 보통주의 수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나) 주식배당에 따른 조정

전환가격 x {주식배당 전 발행된 보통주식 수 / (주식배당 전 발행된 보통주식 수+ 주식배당에 따라 지급될 보통주식 수)}

단, 주식배당이나 재산분배액이 변경될 경우 전환가격도 이에 따라 조정되며,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배당이나 분배로 수취할 수 있는 보통주 전부를 수령할 경우 전환가격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기타 현물배당에 따른 조정

회사가 유가증권이나 기타 재산(현금 제외)으로 현물배당 또는 분배할 경우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보통주가 배당이나 분배받을 것과 동일한 수량의 유가증권 또

등기번호

494310

는 해당 재산을 배당 또는 분배받을 수 있다.

(라) 주식 분할과 병합에 따른 조정

회사가 본 주식의 최초발행일 후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발행 보통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 직전에 적용되던 전환가격을 감액하여 본 주식 1주의 전환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가 발행 보통주식 총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가 본 주식의 최초발행일 후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발행 보통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해당 분할 직전에 적용되던 전환가격을 증액하여 본 주식 1주의 전환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가 발행 보통주식 총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한 조정은 분할 또는 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업무 종료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마) 주식 배당 및 배분에 따른 조정

회사가 본 주식의 최초발행일 후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신주를 배당 또는 기타 배분하거나 또는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통주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 직전에 적용되던 전환가격은 동 발행시간을 기준으로, 또는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일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의 분수를 곱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1) 동 발행시간 또는 기준일 업무 종료시간 직전의 발행 보통주식 총수를 분자로 하고

(2) 동 발행시간 또는 기준일 업무 종료시간 직전의 발행 보통주식 총수 및 동 배당 또는 배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의 수를 합산한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

상기에 불구하고, (a) 기준일이 정해졌지만 지정된 배당일 또는 배분일에 배당 또는 배분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해당 기준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하고, 그 후 전환가격은 해당 배당 또는 배분이 실제 이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본 조항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b) 모든 발행 우선주식이 해당 사유일 현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받았을 것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식을 우선주주가 동시에 배당 또는 기타 배분 받은 경우 상기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바) 기타의 배당 및 배분에 따른 조정

회사가 본 주식의 최초발행일 후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회사의 유가증권 (발행 보통주식에 관계된 보통주식의 배분은 제외함) 또는 기타 재산을 배당 또는 기타 배분하거나 또는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통주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모든 발행 우선주식이 해당 사유일 현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받았을 것과 동일한 금액의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을 보통주주와 동시에 배당 또는 기타 배분 받아야 한다.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사) 합병 또는 회사정리 등에 대한 조정

정관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회사가 포함된 회사정리, 자본재구성, 재분류,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이 발생하고 (우선주식이 아닌) 보통주식이 유가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는 경우 (상기 (마) 또는 (바)의 거래는 제외함), 본 주식의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포기되지 않는 한, 동 회사정리, 자본재구성, 재분류,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따라 우선주식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보통주식은 동 회사정리, 자본재구성, 재분류,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직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주식의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해당 거래

등기번호	494310
------	--------

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종류와 금액의 유가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본 주식의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본 제1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이사회가 선의로 결정하는)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제11조의4의 내용(전환가격의 변경 및 기타 조정에 관한 내용 포함)은 그 후 우선주식의 전환 시 전달해야 하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마)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따른 조정

본 주식 발행 후 12개월 이내에 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제도에 따른 발행주식 수를 증대시킬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CP2 = CP1 * (A \div (A + B))$$

CP2 : 조정 후 전환가격

CP1 : 조정 전 전환가격

A : 본 주식 발행일 직후 기준 보통주식의 수(전환, 교환 등으로 발행가능한 보통주식의 경우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주식매입선택 제도에 따라 미배정된 보통주식을 포함함)

B : 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에 따라 증가될 주식의 수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⑥ 중대한회사사유 및 우선주주의 전환권

1. 다음 각 호의 사유(이하 “중대한 회사사유”)로 인하여 본 주식 우선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중대한 회사사유를 진행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발행된 본 주식 우선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로 달리 의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 발행, 합병, 주식 분할, 병합 또는 소각과 관련한 또는 그로 인한 신주의 배정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포괄적 주식양도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2. 제1항이 정한 본 주식의 주주의 종류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회사사유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이하 본조에서 “반대주주”)는 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3.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반대주주는 해당 중대한 회사사유를 안건으로 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시간 또는 해당 중대한 회사사유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 이전에 언제든지 어떠한 추가 지급 없이 보유 주식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행 가격을 관련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만큼의 보통주식이 발행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11조의 4가 정한 바에 따른다.

2014년 12월 09일 발행 2014년 12월 23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 (또는 존속기간 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3) 전환비율~~

~~가)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시 전환주식수는 본건 투자계약서에 따른다.~~

~~나)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종류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종류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와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다)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times \{(Ac/Bc) - 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와 보통주를 합한)~~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등기번호

494310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3년 03월 21일 발행 2013년 03월 21일 등기~~

~~2015년 07월 01일 말소 2015년 10월 06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2013년 08월 08일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은 2013년 03월 21일 발행된 종류주식의 내용과 동일함.~~

~~2013년 08월 08일 발행 2013년 08월 19일 등기~~

~~2015년 07월 01일 말소 2015년 10월 06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1)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전환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3) 전환비용~~

~~가)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시 전환주식수는 본건 인수대금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나)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 또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회사 내부 인력이 아닌 제 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또는 이해관계인 보유주식의 매각가액)의 70%~~

~~다)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의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청구권: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2015년 10월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어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3년 09월 26일 발행 2013년 09월 26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등기번호

494310

1)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1)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 (또는 존속기간 만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전환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3)전환비율

가)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시 전환주식수는 본건 인수대금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나)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 또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회사 내부 인력이 아닌 제 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또는 이해관계인 보유주식의 매각가액)의 70%

다)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의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의 보통주를 합한)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2015년 10월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금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2013년 10월 01일 발행 2013년 10월 01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 401호(잠원동, 태승빌딩) 펜션짱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 601호(잠원동, 태승빌딩) 주식회사 나우마케팅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 401호(잠원동, 태승빌딩) 주식회사 블루스테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61, 601호(잠원동, 태승빌딩) 주식회사 오렌지스카이를 합병.~~

~~2013년 10월 02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라. 전환에 관한 사항~~

~~1)전환기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일 까지 (또는 존속기간 말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류주식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3) 전환비율~~

~~가)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시 전환주식수는 본건 인수대금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나)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 또는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회사 내부 인력이 아닌 제 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또는 이해관계인 보유주식의 매각가액)의 70%~~

~~다)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청구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2015년 10월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하며,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등기번호	494310
------	--------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3년 10월 09일 발행 2013년 10월 10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2, 1층 (논현동, 명화빌딩) 주식회사 곳닥을 합병
2013년 10월 28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이다.~~
- ~~2) 상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의 동시에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3)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종류주식 일주당 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 ~~1) 전환기간: "투자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의 50%는 최초 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나머지 50%는 최초 발행일 이후 3년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피투자기업"은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2)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가)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나)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피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종류주식 및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기 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은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참가적 우선권을 가지며,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

~~원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피투자기업”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는 상환청구시점 이전에도 제33조 제①항 1호 내지 1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기한 전 상환”) 또는 “피투자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상호 협의 하에 “투자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방법: “투자자”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17조의 전환청구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3) 상환가액: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인수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 (“기한 전 상환”의 경우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한 종류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4년 04월 11일 발행 2014년 04월 15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지 상환주식이며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이다.~~

~~2) 상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3)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종류주식 일주당 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투자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최초 발행일 이후 존~~

등기번호

494310

~~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한편, 제19조 3항에서 정한 대주주 등의 매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수청구 주식수를 제외하고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 3항에 따른 매수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투자자”는 대주주 등의 매수청구 가능주식수인 3,691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 이후에도 발행일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다만, 기업공개(IPO)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 3항에서 정한 대주주 등의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발행일 이후 3년 이전에도 전체 주식수에 대한 전환 및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단, “피투자기업”은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2)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가)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나)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피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종류주식 및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은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참가적 우선권을 가지며,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피투자기업”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상환방법: “투자자”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17조의 전환청구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가액: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인수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 (“기한 전 상환”의 경우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한 종류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등기번호	494310
------	--------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4년 04월 19일 발행 2014년 04월 22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13-23 4층 주식회사 라이프마켓을 합병.~~

~~2014년 04월 29일 등기 2014년 04월 29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이다.~~

~~2) 상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의 동시에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3)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종류주식 일주당 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투자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최초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가)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피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허가~~

~~나) 종류주식 및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은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참가적 우선권을 가지며, 주당 발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권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피투자기업”에 본권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는 상환청구시점 이전에도 제33조 제①항 1호 내지 1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기한 전 상환”) 또는 “피투자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상호 협의 하에 “투자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방법: “투자자”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17조의 전환청구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3) 상환가액: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인수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 (“기한 전 상환”의 경우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한 종류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4년 04월 30일 발행 2014년 05월 02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이다.~~

~~2) 상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의 동시에 본 권 종류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3)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종류주식 일주당 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투자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최초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가)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피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종류주식 및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text{“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text{“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text{조정 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 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은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참가적 우선권을 가지며,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피투자기업”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는 상환청구시점 이전에도 제33조 제①항 1호 내지 1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기한 전 상환”) 또는 “피투자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상호 협의 하에 “투자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방법: “투자자”가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17조의 전환청구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3) 상환가액: “투자자”는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인수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 (“기한 전 상환”의 경우 연복리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한 종류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4년 05월 08일 발행 2014년 05월 12일 등기

등기번호

494310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3월 17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지 상환주식이며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이다.
- 2) 상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3)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종류주식 일주당 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본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 인수인은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의 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투자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최초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가)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피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종류주식 및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이나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종류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라.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종류주식은 "피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참가적 우선권을 가지며,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마.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상환기간: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피투자기업"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투자자"는 상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청구시점 이전에도 제33조 제④항 1호 내지 1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기한 전 상환”) 또는 “피투자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상호 협의 하에 “투자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방법 : “투자자”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17조의 전환청구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3) 상환가액 :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인수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가 (“기한 전 상환”의 경우 연복리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될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계약에 의한 종류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종류주식 인수계약에 따른다.~~

~~2014년 05월 16일 발행 2014년 05월 19일 등기~~

~~2014년 12월 10일 말소 2015년 01월 06일 등기~~

1. 회사분할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 에이동 (신사동, 제이타워) 주식회사 엘로쇼핑미디어를 설립

2015년 03월 19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 에이동(신사동, 제이타워) 주식회사 엘로쇼핑미디어를 합병

2017년 01월 16일 등기 2017년 01월 16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2018년 02월 23일 설치 2018년 02월 23일 등기

1. 회사분할

2018년 4월 2일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4층 에이동 (신사동, 제이타워) 주식회사 쿠차를 설립

2018년 04월 27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 1회 사모전환사채~~

< 2014년 04월 30일 발행 2014년 05월 09일 등기 >

< 2015년 12월 30일 전부전환 2015년 12월 31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3,000,000,000원~~

등기번호	494310
------	--------

<p>< 2014 년 04 월 30 일 발행 2014 년 05 월 09 일 등기 > 금2,000,000,000원</p> <p>< 2014 년 12 월 10 일 일부전환 2015 년 01 월 06 일 등기 > 금1,500,000,000원</p> <p>< 2015 년 05 월 21 일 변경 2015 년 06 월 24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30 일 전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p> <p>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1,500,000,000원권 2매</p> <p>< 2014 년 04 월 30 일 발행 2014 년 05 월 09 일 등기 > 금1,500,000,000원권 1매, 500,000,000원권 3매</p> <p>< 2014 년 12 월 10 일 변경 2015 년 01 월 06 일 등기 > 금1,500,000,000원권 1매, 500,000,000원권 1매</p> <p>< 2014 년 12 월 10 일 일부전환 2015 년 01 월 06 일 등기 > 금1,500,000,000원권 1매</p> <p>< 2015 년 05 월 21 일 변경 2015 년 06 월 24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30 일 전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p> <p>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p> <p>< 2014 년 04 월 30 일 발행 2014 년 05 월 09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30 일 전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p> <p>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1. 전환의 조건</p> <p>가. 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이 청구서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채의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나. 전환가격 : 1주당 금 704,337 원</p> <p>다.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p> <p>1)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4,259 주</p> <p>2) 1주의 금액 : 금오천 원</p> <p>마. 전환가격의 조정</p> <p>1)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기”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은행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p> <p>조정후 전환가격 =</p> <p style="text-align: center;">1주당발행가액</p> <p style="text-align: center;">(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p>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시가(or 제2호 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격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은행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3) "1)"목 및 "2)"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바.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이자계산,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회사의 정관에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아. 회사는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전환청구에 의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014 년 04 월 30 일 발행 2014 년 05 월 09 일 등기 >~~

~~가. 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이 청구서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전환가격 : 1주당 금 352,168원~~

~~다.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어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마. 전환가격의 조정~~

~~1)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가"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은행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1주당발행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

~~시가(or 제2호 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격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등기번호	494310
------	--------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 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은행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 액으로 조정한다.~~

3) "1)"목 및 "2)"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바.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사채 의 이자계산,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 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회사의 정관에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아. 회사는 은행이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은행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단,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전환청구에 의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015 년 05 월 21 일 변경 2015 년 06 월 24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30 일 전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4,259주~~

~~나. 1주의 금액 : 금오천원~~

< 2014 년 04 월 30 일 발행 2014 년 05 월 09 일 등기 >

~~보통주식~~

< 2015 년 05 월 21 일 변경 2015 년 06 월 24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30 일 전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2014년 05월 01일 부터 2017년 04월 29일 까지~~

< 2014 년 04 월 30 일 발행 2014 년 05 월 09 일 등기 >
 < 2015 년 12 월 30 일 전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 2 회 전환사채~~

< 2014 년 05 월 08 일 발행 2014 년 05 월 12 일 등기 >
 <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2,000,000,000원~~

< 2014 년 05 월 08 일 발행 2014 년 05 월 12 일 등기 >

~~금1,000,000,000원~~

< 2015 년 12 월 30 일 일부전환 2016 년 01 월 11 일 등기 >
 <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1,000,000,000원권 2매~~

< 2014 년 05 월 08 일 발행 2014 년 05 월 12 일 등기 >

~~금1,000,000,000원권 1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	--------

< 2015 년 12 월 30 일 일부전환 2016 년 01 월 11 일 등기 >
 <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
프로~~

< 2014 년 05 월 08 일 발행 2014 년 05 월 12 일 등기 >
 <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을”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이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주권을 “을”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권 발행교부전까지는 주권불소지신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 ~~1) 전환금액 : 사채인수금액의 부분 또는 전액~~
- ~~2) 주식의 종류 :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 ~~3) 최초 발행시 전환가격 : 704,337 원(액면 5,000 원)~~

~~나. 각 사채의 전환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갑”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제가항의 ‘최초 발행시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정된다.~~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이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이 “을”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후 3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당 발행가격 677,247원 이상의 유상신주는 본항의 전환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항의 전환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나, 발행규모 및 발행가액에 대해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필히 받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

~~2) “갑”이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 “을”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상장은 “갑”이 한국거래소의 유기증권시장,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NASDAQ시장 및 상시 시장에 준하는 해외시장으로 “을”가 인정하는 시장(코넥스는 제외)에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를 말함(이하 “상장”이라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다만, 본항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전 전환가격}}{X} \left(\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 / \text{시가}]}{\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right)$$

~~3) 상장시 공모가 가격(또는 직등록시 시초가)의 [60%] 또는 합병시 평가가액의 [60%]에 해당~~

등기번호

494310

~~하는 가격이 전환가격을 하회할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상장시 공모가의 60% 또는 합병시 평가가액의 60%~~

~~4) 보증인이 보유주식을 회사 내부 인력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의 70% 가액이 전환가격 이하일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매각가액의 70%~~

~~5) 2014년 실적에 따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MIN(100% , MAX(50% , 2014년 결산 감사보고서 EBITDA / 200억원))~~

~~6)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7) 전환청구전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상기 조정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은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높아질 수 없다.~~

~~8)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격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9)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계약에 의해 발행된 전환사채의 50%는 발행일 익일부터 사채 만기일 까지~~

~~2) 본계약에 의해 발행된 전환사채의 50% (“갑”의 콜옵선행시 가능대상)는 상장일 또는 발행일로부터 2년6개월 경과되는 날 중 빠른날부터 사채 만기일 까지~~

~~마. “을” 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의 사채이자 는 전환청구일 전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바. “을” 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갑” 은, “갑” 및 “을” 이 지정하는 이해관계인과 “을” 간에 “을” 이 따로 정하는 별첨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다.~~

~~< 2014년 05월 08일 발행 2014년 05월 12일 등기 >~~

~~가. “을” 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 이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갑” 은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주권을 “을” 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권 발행교부전까지는 주권불소지신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전환금액 : 사채인수금액의 부분 또는 전액~~

~~2) 주식의 종류 :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3) 최초 발행시 전환가격 : 352,168원(액면 5,000원)~~

~~나. 각 사채의 전환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갑” 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제가항의 ‘최초 발행시 전환가격’ 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정된다.~~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이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이 “을” 의 주당 실질 전환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등기번호

494310

~~(단,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후 3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당 발행가격 677,247원 이상의 유상신주는 본항의 전환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시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항의 전환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나, 발행규모 및 발행가액에 대해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 받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

~~2) “갑”이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 을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발행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상장은 “갑”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NASDAQ시장 및 상시 시장에 준하는 해외시장으로 을이 인정하는 시장(코넥스는 제외)에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을 말함(이하 “상장”이라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다만, 본항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frac{\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 / \text{시가}]}{\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

~~3) 상장시 공모가 가격(또는 직등록시 시초가)의 [60%] 또는 합병 시 평가가액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이 전환가격을 하회할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상장시 공모가의 60% 또는 합병시 평가가액의 60%~~

~~4) 보증인이 보유주식을 회사 내부 인력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 시 주당 매각가액의 70% 가액이 전환가격 이하일 경우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매각가액의 70%~~

~~5) 2014년 실적에 따라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MIN(100% , MAX(50% , 2014년 결산 감사보고서 EBITDA / 200억원))~~

~~6)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frac{(\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 전환가격})}{(\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7) 전환청구전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상기 조정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은 조정전 전환가격보다 높아질 수 없다.~~

~~8)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격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9)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계약에 의해 발행된 전환사채의 50%는 발행일 익일부터 사채 만기일 까지~~

~~2) 본계약에 의해 발행된 전환사채의 50%(“갑”의 콜옵선행사 가능대상)는 상장일 또는 발행일로부터 2년6개월 경과되는 날 중 빠른날부터 사채 만기일 까지~~

~~마. “을”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의 사채이자 는 전환청구일 전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번호	494310
------	--------

<p>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p> <p>바. “을” 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갑” 은, “갑” 및 “을” 이 지정하는 이해관계인과 “을” 간에 “을” 이 따로 정하는 별첨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다.</p> <p>< 2015 년 05 월 21 일 변경 2015 년 06 월 24 일 등기 ></p> <p><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p> <p>카명식 보통주식</p> <p>< 2014 년 05 월 08 일 발행 2014 년 05 월 12 일 등기 ></p> <p><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p> <p>1. 전환청구기간</p> <p>가. 전환사채 50프로는 2014년 05월 09일부터 2017년 05월 08일까지. 나. 전환사채 50프로는 상장일 또는 2016년 11월 08일 경과되는 날 중</p> <p>빠른 날부터 2017년 05월 08일 까지</p> <p>< 2014 년 05 월 08 일 발행 2014 년 05 월 12 일 등기 ></p> <p>< 2016 년 11 월 11 일 전부전환 2016 년 11 월 15 일 등기 ></p>

전 환 사 채	
제 3회 사모전환사채	
< 2014 년 06 월 12 일 발행 2014 년 06 월 17 일 등기 >	
< 2016 년 12 월 02 일 전부전환 2016 년 12 월 05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2,000,000,000원	
< 2014 년 06 월 12 일 발행 2014 년 06 월 17 일 등기 >	
금1,500,000,000원	
< 2014 년 12 월 10 일 일부전환 2015 년 01 월 06 일 등기 >	
금1,000,000,000원	
< 2015 년 07 월 13 일 일부전환 2015 년 07 월 14 일 등기 >	
금500,000,000원	
< 2015 년 12 월 30 일 일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	
< 2016 년 12 월 02 일 전부전환 2016 년 12 월 05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1,000,000,000원권 2매	
< 2014 년 06 월 12 일 발행 2014 년 06 월 17 일 등기 >	
금1,000,000,000원권 1매, 500,000,000원권 2매	
< 2014 년 12 월 10 일 변경 2015 년 01 월 06 일 등기 >	
금1,000,000,000원권 1매, 500,000,000원권 1매	
< 2014 년 12 월 10 일 일부전환 2015 년 01 월 06 일 등기 >	
금1,000,000,000원권 1매	
< 2015 년 07 월 13 일 일부전환 2015 년 07 월 14 일 등기 >	
금500,000,000원권 2매	
< 2015 년 12 월 30 일 변경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금500,000,000원권 1매~~

~~< 2015 년 12 월 30 일 일부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등기 >~~

~~< 2016 년 12 월 02 일 전부전환 2016 년 12 월 05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 2014 년 06 월 12 일 발행 2014 년 06 월 17 일 등기 >~~

~~< 2016 년 12 월 02 일 전부전환 2016 년 12 월 05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이 청구서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채의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전환가격 : 1주당 금 704,337 원~~

~~다. 전환비용 및 전환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2,839 주~~

~~2) 1주의 금액 : 금오천원~~

~~마. 전환가격의 조정~~

~~1) 보통주 또는 종류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기”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frac{\text{1주당발행가액}}{\text{[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imes \text{시가(or 제2호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격 ×~~

$$\frac{\text{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투자자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3) "1)"목 및 "2)"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바.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이자계산,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회사의 정관에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등기번호

494310

~~아. 회사는 투자자가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투자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전환청구에 의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014 년 06 월 12 일 발행 2014 년 06 월 17 일 등기 >~~

~~가. 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이 청구서에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채의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전환가격 : 1주당 금 352,168원~~

~~다.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마. 전환가격의 조정~~

~~1) 보통주 또는 종류주의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또는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가”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frac{\text{1주당발행가액}}{\text{(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imes \text{)} \times \text{시가(or 제2호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투자자의 전환청구 전에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3) "1)"목 및 "2)"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바.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사채의 전환은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환사채의 이자계산,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회사의 정관에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아. 회사는 투자자가 주식의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투자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전환청구에 의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일 내에 본점~~

등기번호	494310
------	--------

<p>소채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 2015년 05월 21일 변경 2015년 06월 24일 등기 > < 2016년 12월 02일 전부전환 2016년 12월 05일 등기 ></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p> <p>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2,839주</p> <p>나. 1주의 금액 : 금오천원</p> <p>< 2014년 06월 12일 발행 2014년 06월 17일 등기 ></p> <p>보통주식</p> <p>< 2015년 05월 21일 변경 2015년 06월 24일 등기 > < 2016년 12월 02일 전부전환 2016년 12월 05일 등기 ></p> <p>1. 전환청구기간</p> <p>2014년 06월 14일 부터 2017년 06월 12일 까지</p> <p>< 2014년 06월 12일 발행 2014년 06월 17일 등기 > < 2016년 12월 02일 전부전환 2016년 12월 05일 등기 ></p>
--

<p>전 환 사 채</p>
<p>제4회 전환사채</p> <p>1. 전환사채의 총액</p> <p>미화 금43,000,000달러</p> <p>1. 각 전환사채의 금액</p> <p>미화 금 24,350,000권 1매, 미화 금 10,000,000권 1매, 미화 금 5,000,000권 1매, 미화 금 3,000,000권 1매, 미화 금 650,000권 1매</p> <p>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p> <p>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퍼센트</p> <p>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p> <p>1. 전환의 조건</p> <p>①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전환가격 : 1주당 주당 \$7,625.2을 사채인수계약서 체결일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 (현재 환율 기준 9,157,865원)</p> <p>2) 전환비율 및 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전환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가 미만이 될 수 없다.</p> <p>1)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p> <p>2) 주식 배당에 따른 조정</p> <p>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주식배당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주식배당 후 보통주 총 발행주식 수)</p>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	--------

<p>3) 보통주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해당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수)]</p> <p>4) 재산 및 부채 배분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배분 재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액) ÷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p> <p>5) 주주외 제3자에게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 또는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권리,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가.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IPO의 경우 (x)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IPO가격의 90%, 또는 (y) 조정 이전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식 시장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으로 조정. 나.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그 이후의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IPO가격으로 조정. 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따름: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신발행주식수)]</p> <p>6) 공개매수 및 공개교환매수에 따른 조정 조정 전 전환가격 X [매수 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 {응모한 주식의 공정가액 + (매수 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p> <p>7) 전환권리 변경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p> <p>1. 전환청구기간 2017년 2월 2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016년 02월 01일 발행 2016년 02월 15일 등기</p>
--

전 환 사 채
제5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 금30,000,000달러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금30,000,000권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 액면금액의 100 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①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번호

494310

- 1) 전환가격 : 1주당 9,225,729원(단, 아래 ②와 같이 조정 가능)
- 2) 전환비율 및 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1달러당 1,209.9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가 미만이 될 수 없다.

- 1)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2) 주식 배당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주식배당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주식배당 후 보통주 총 발행주식 수)

- 3) 보통주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해당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수)]

- 4) 재산 및 부채 배분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 배분 재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액) ÷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 5) 주주의 제3자에게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 또는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권리,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가.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IPO의 경우 (x)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IPO가격의 90%, 또는 (y) 조정 이전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식 시장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으로 조정.

나.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그 이후의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IPO가격으로 조정.

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따름: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6) 공개매수 및 공개교환매수에 따른 조정

조정 전 전환가격 = [매수 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 {응모한 주식의 공정가액 + (매수 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 7) 전환권리 변경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1. 전환청구기간

2017년 2월 20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등기번호	494310
------	--------

2016년 02월 19일 발행 2016년 03월 04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6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 금10,000,000 달러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금1,000,000원 1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 액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①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가격 : 1주당 8,752,204원 단, 아래 ②와 같이 조정 가능.

2) 전환비율 및 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가 미만이 될 수 없다.

1)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주식 배당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주식배당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주식배당 후 보통주 총 발행주식 수)

3) 보통주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해당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수)]

4) 재산 및 부채 배분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배분 재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액) ÷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5) 주주의 제3자에게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 또는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권리,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가.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IPO의 경우 (x)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IPO가격의 90%, 또는 (y) 조정 이전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식 시장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으로 조정.

나.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그 이후의 IPO 가격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IPO가격으로 조정.

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따름: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	--------

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신발행주
 6) 공개매수 및 공개교환매수에 따른 조정
 조정 전 전환가격 X [매수 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 {응모
 한 주식의 공정가액 + (매수 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7) 전환권리 변경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
 통주식수 + 변경 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2017년 4월 10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2016년 04월 07일 발행 2016년 04월 21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7회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 금10,000,000달러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금1,000,000원 1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금액 : 사채총액의 전액

1) 전환가격 : 1주당 주당 \$762.52을 사채인수계약서 체결일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 환율로 환산
 한 원화금액 (현재 환율 기준 873,695원)

2) 전환비율 및 주식수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
 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가 미만이 될
 수 없다.

1)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는 당해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종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
 격을 조정한다.

2) 주식 배당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주식배당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주식배당 후 보통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주 총 발행주식 수)

3) 보통주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해당 옵션, 권리 및 워런트 발행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식수)]

4) 재산 및 부채 배분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배분 재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액) ÷ 1주당 전환가격 또는 시가]

5) 주주외 제3자에게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 또는 보통주, 전환 또는 교환가능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권리, 워런트의 전환가격의 110% (IPO 이전 또는 IPO와 관련한 발행) 또는 시장가격(IPO 이후) 이하 발행에 따른 조정

가. IPO의 경우 (x) IPO 가격이 전환가격의 110%보다 낮은 경우에는 IPO가격의 90%, 또는 (y) 조정 이전 마지막 거래일의 보통주 시장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으로 조정.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따름: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 보통주식수 + 회사가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1주당 전환가액 또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식수) ÷ (기발행 보통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6) 공개매수 및 공개교환매수에 따른 조정

조정 전 전환가격 X [매수 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 {응모한 주식의 공정가액 + (매수 후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x 매수 마지막 날의 시가)}]

7) 전환권리 변경에 따른 조정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 (전환권 변경에 따른 조정 공표 전 기발행 보통주식수 + 변경 후 전환에 따라 발행가능 보통주식수)]

③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엘로모바일 기명식 보통주식

④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2.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① 사채의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단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Qualifying IPO” *이 만기 전 180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채의 인수인들은 액면금액의 130%와 미지급 발생이자의 합계로 조기 상환 청구 (Put)가 가능 하다.

* “Qualifying IPO”란 KOSDAQ, NASDAQ 또는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50억불 이상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함

3. 전환사채 조기상환선택권

① 회사는 연속하여 10거래일간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에 따른 보통주의 시가가 전환가격의 175% 이상인 경우 사채의 인수인에게 사전 통지 후 원금 및 시장이자율(미국고채 고시 연수익율 + 0.50%)에 따라 할인한 조기상환일 이후 지급이자(Make-Whole Amount) 및 미지급 발생이자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② 단,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또는 전환청구 제한 기간 동안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는 조기상환 선택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4.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의 통지로 발행회사는 모든 기한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494310
------	--------

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리금을 사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①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이자 등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②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파산, 폐업,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④ 계약의 진술 및 보장사항에 위반이 있고,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 등

5. 거주자에 대한 양도제한: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사채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IPO가 본 사채 만기 180일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채권자의 만기 1달전 서면 통지로 사채의 만기는 기업공개 완료 후 210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는 \$1억불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 회사는 그 이상의 무담보 또는 후순위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또는 (ii) 동순위 담보를 제공하는 한, 그 이상의 채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음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11월 16일까지
2016년 11월 17일 발행 2016년 12월 01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당회사는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013년 07월 10일 설정 2013년 07월 12일 등기 >

~~당회사는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013년 10월 01일 변경 2013년 10월 02일 등기 >

당회사는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016년 03월 30일 변경 2016년 04월 12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다~~

등기번호

494310

~~만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2013 년 07 월 10 일 설정 2013 년 07 월 12 일 등기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직원의 100분의 99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2013 년 11 월 15 일 변경 2013 년 11 월 21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나.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다.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 2013 년 07 월 10 일 설정 2013 년 07 월 12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회사의 임직원~~

~~나.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 2013 년 11 월 15 일 변경 2013 년 11 월 21 일 등기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 직원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 2016 년 03 월 30 일 변경 2016 년 04 월 12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등기번호	494310
------	--------

< 2013 년 07 월 10 일 설정 2013 년 07 월 12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당해 임. 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당해 임. 직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 2013 년 07 월 10 일 설정 2013 년 07 월 12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2 년 08 월 22 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2 년 08 월 22 일 등기
-------------------------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